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28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9. 접수 제43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8. 16.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9. 8. 16. E로부터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2019. 8. 20.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B이 2019. 8. 16. 기준으로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13,704,623원이었다.

다. B은 2019. 3. 28. 피고에게 B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F주택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210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0. 9. 8. 이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다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인인 2019. 3. 28.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후 B은 E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당시인 2019. 3. 28.에는 가까운 장래에 E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성립하였고, A이 이를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A을 비롯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2019. 3. 28.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B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인권행사의 효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3.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인권 행사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

별지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 제1층 호

(1종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철근콘크리트조 웰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3세대)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95.80㎡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2세대)95.80㎡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2세대)95.80㎡

3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2세대)95.80㎡

4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2세대)76.02㎡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연면적제외)5.7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시 동작구 대 17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43.1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170.6분의 22.62

-이상-

